

■ 법률 칼럼

최근 이민 소식

1. 4월 영주권 문호 관련 소식

4월 영주권 문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오랫동안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초청장과 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었고 심사가 모두 끝난 경우에 바로 영주권 승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월부터는 승인 가능일이 돌아왔고 그 결과 영주권 초청장과 영주권신청서의 동시 접수는 가능하지만 초청장(I-130)이 2020년 9월8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최종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3순의 경우는 학사/2년 숙련직의 경우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PERM LC가 승인된 경우에는 바로 취업이민 초청장/청원서(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숙련직의 경우는 여전히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2020년 2월1일로 묶여 있어 PERM LC가 승인이 되더라도 우선일자(Priority Date: PERM 접수일)가 2020년2월1일 또는 그 이전인 경우만 I-14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140을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 해야 합니다.

이번 4월 문호에서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종교이민의 문호 후퇴입니다. 종교이민은 청원서(I-360)가 승인이 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I-485)을 하는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난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I-360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바로 접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대기 기간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번 4월부터는 대기 기간이 4년반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번 4월부터는 I-360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도 4년반 가량을 대기해야 I-485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취업이민 노동청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노동청 처리 기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대처하기 바랍니다.

- 1) 적정 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기간 장기화
- 2) PERM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의 장기화
- 3) 펌 거절율 2배로 증가
- 4) 오ટ 증가

3. USCIS 추가서류 답변 및 항소기간 연장 종료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추가서류 요청과 기타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 답변 기간을 정해진 Deadline으로부터 60일까지 더 주었고 재심 및 항소에 대해서도 케이스 결정일로부터 90일까지 재심 항소 기간을 할 수 있도록 항소/재심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연장을 지난달 3월 24일부터 발부되는 추가 서류 요청 그리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거나 재심/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당뇨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상식



■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당뇨 자체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질환 특성상 장기간 치료와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식단 변화나 정기적인 운동 등의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된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 인슐린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평생 써야 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생성 자체가 결국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지만, 제1형 혼한 당뇨병인 2형 당뇨병에서는 질병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생활습관 교정이 잘 되는 경우 인슐린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인슐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심해 졌다?

많이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쓰고 나서 당뇨가 심해지고, 당뇨합병증이 왔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슐린 주사는 대부분 당 수치가 아주 높거나 일반 경구약으로 잘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시작할 때는 이미 당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합병증이 흔하게 오는 것이 인슐린을 사용한다고 당뇨가 더 나빠지거나 부작용으로 당뇨합병증이 오는 것은 아

닙니다.

■ 감기에 걸려 감기약을 먹고 있을 때는 당뇨약을 안 먹는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있을 때에도 약은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

과일도 많은 양의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착즙하거나 주스로 먹을 경우 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껍질째 통째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Glycemic Index (혈당지수라고 하여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당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에는 파인애플, 수박 등이 있고,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사과, 오렌지, 베리류, 바나나, 배,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